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4.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20	염태영의원 등 15인	'25.2.7.	상정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03.13.)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8762	윤준병의원 등 14인	'25.3.11.	상정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03.13.)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8830	박용갑의원 등 13인	'25.3.12.	상정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03.13.)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132	황정아의원 등 10인	'25.3.20.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549	권향엽의원 등 16인	'25.4.3.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590	윤종오의원 등 19인	'25.4.7.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600	황운하의원 등 12인	'25.4.7.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632	문진석의원 등 10인	'25.4.8.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2209658	구자근의원 등 10인	'25.4.9.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04.16.)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4. 23.)는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u>2년</u>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 력을 가진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4년</u>----- -----.